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통위원 임기종료 후 익명 처리하지 않은 의사록
전문 상시 공개〉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54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금통위원 임기종료 후 익명 처리하지 않은 의사록 전문 상시 공개 (안 제24조제4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10. 11.

다. 회 부 일 : 2024. 10.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관련 사항, 한국은행통화안전증권 발행, 매출, 환매 등에 관한 사항,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음.

이처럼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사항들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공개함에 있어서는 요약된 의사록 형태로 제공되고,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극히 제한된 대상에게만 비공개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의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공개방식을 유지하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익명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의사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금통위원 임기종료 후 익명 처리하지 않은 의사록 전문 상시 공개 (안 제24조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 익명으로 처리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전문(금통위 개최 후 4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 <u><신 설></u>	○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 (현행과 같음) - <u>해당 금통위 회의에 참여한 금통위원 전원의 임기종료 후 익명 처리하지 않은 의사록 전문 상시 공개</u>

현행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¹⁾, 금융통화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및 익명 처리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전문(全文)을 비공개로 제출하되, 익명 처리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전문은 해당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4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금통위원 전원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익명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의사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

1) 「한국은행법」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記名)하고 날인(捺印) 또는 서명(署名)하여야 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4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1.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2. 익명으로 처리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전문(全文)

려는 내용임.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하는 등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사항들을 결정하는 기구임²⁾. 그러나 금통위 회의 과정은 요약된 의사록 형태로 공개되고,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극히 제한된 대상에게만 비공개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임³⁾. 「금융

2) 「한국은행법」 제12조(설치)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한국은행권(韓國銀行券)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업무(與信業務)의 기준 및 이자율
4.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5. 한국은행이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
6. 공개시장에서의 한국은행의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 등의 매매 및 대차(貸借)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7.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매출·환매(還買) 및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8.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9.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
10. 제81조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1.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제81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제87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5.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
16.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
17. 금융기관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18. 극심한 통화팽창기(通貨膨脹期)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19.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 승인
20.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3)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운영규정」 제12조(의사록의 작성) ① 의장은 제11조에 따라 작성한 속기록을 근거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정회 및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 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통화위원회 회의운영규정」에 따라 공개되는 의사록에는 안건 심의와 관련한 위원의 주요 토의내용은 익명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의결사항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의 성명은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음.

개정안은 금통위원 전원의 임기가 종료한 경우 금통위 회의 의사록 전문을 익명처리하지 않은 채 상시 공개하려는 것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금통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특히,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 의사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통화신용정책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되짚어 봄으로써 정책결정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오류 재발을 방지하여 정책결정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안건의 제목 및 처리결과

5. 안건 심의와 관련한 위원의 주요 토의내용(익명으로 기술)

6. 의결사항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의 성명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운영규정」 제13조(의사록의 공개 등) ① 의장은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의사록의 내용 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화요일(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신용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의 시기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금통위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금통위 개최 후 4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1. 금통위 의결서

2. 익명으로 처리된 금통위 의사록 전문

다만, 익명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의사록 전문의 상시 공개는 사후 책임소재 추궁 가능성으로 인하여 토론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이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부차적인 사항에 관심을 가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기명 처리된 의사록 전문을 상시 공개할지 여부는 이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① ~ ③ (생략) <신 설>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금융통화위원회는 해당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임기만료된 경우에는 의사록 전문(익명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

문의처

02)6788-5157

참고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결정기구의 의사록 등 공개 현황

구분	의사록 등 공개 주요 내용	공개 수준
FED (미국)	- 법적 의무 없음. 공개 여부·시기 자체 결정 - 의사록: 회의 종료 3주 후 공개 - 상세의사록: 회의 종료 5년 후 공개(실명)	- 찬반위원 명단 - 반대위원(실명) 의견
ECB (유럽)	- 법적 의무 없음. 공개 여부·시기 자체 결정 - 의사록: 회의 종료 4주 후 공개	개별 위원 의견 비공개
BOE (영국)	- 의사록: 법률에 따라 공개. 공개 시기 자체 결정(회의 종료 다음 날 공개) - 상세의사록: 법적 의무 없음. 공개 여부·시기 자체 결정(회의 종료 8년 후 공개, 실명)	- 찬·반위원 명단 - 반대위원(실명) 의견
BOJ (일본)	- 의사록·상세의사록: 법률에 따라 공개¹⁾. 공개 시기 자체 결정 - 의사록: 차기 회의 승인 후 3영업일 - 상세의사록: 회의 종료 10년 후(실명)	- 찬·반위원 명단 - 반대위원(실명) 의견
BOC (캐나다)	- 법적 의무 없음. 공개 여부·시기 자체 결정 - 의사록: 회의 2주 후 공개	개별 위원 의견 비공개
RBNZ (뉴질랜드)	- 의사록: 법률에 따라 공개²⁾ - 의사록: 회의 당일 공개	개별 위원 의견 비공개
Riksbank (스웨덴)	- 법적 의무 없음. 공개 여부·시기 자체 결정 - 의사록: 회의 후 5영업일 이내 공개	개별의견(실명)

주 1) 일본은 행법상 의사요지는 의사록(minutes), 의사록은 상세의사록(transcripts)에 해당

2) 통화정책위원회 헌장(Monetary Policy Committee Charter)에 따르면 즉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동 헌장은 통화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사결정 절차와 공표 방법 등을 정한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합의서)

자료: 한국은행